

목 차

정 관	1
-----------	---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 1) 본 회사는 에이치에스화성주식회사라 칭한다.
- 2) 영문으로는 HS HWASUNG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철강구조 물공사업 등)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 건설관련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2. 해외건설 및 해외투자개발사업, 해외기술용역 및 컨설팅
3. 주택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건물시설 및 공동주택관리업, 빌딩관리업
4.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 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환경기자재제조사업, 재활용사업, 물질약전문업, 물재이용사업,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운영사업 등 환경관련사업 일체
5.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파일, 조립식콘크리트부재, 주택용기자재등의 설계, 시 공, 생산 및 관련장비제조판매업
6.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창고임대업, 건설기계임대업 및 정비업, 주차장업, 해륙운송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7.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 측량업, 감리전문업(건설, 전기, 소방, 설계 등), 종합개발컨설팅업, 정보처리용역업, 정보기술개발사업,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사업관리(CM)
8.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운영업
9.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판매업, 슈퍼체인사업, 식료품 가공 및 제조업 일체
10. 신용카드와 관련된 발행, 관리 및 부대사업 일체
11. 수출입업, 면세사업
12. 방송사업, 영화상영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및 광고대행업
13. 출판사업 및 음반, 필름, 테이프 제작 판매업
14. 무선통신 및 차량전화사업
15.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16. 관광사업, 관광호텔업, 레저산업 및 국내외 여행 알선업
17.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 운영업
18. 금융업 및 보험사업의 대리업
19. 造林, 育林, 종묘, 임산물생산 관상수 재배, 기타 산림경영사업
20. 농, 축, 수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21. 급식사업 및 부대사업 일체
22. 인터넷쇼핑몰사업 및 부대사업 일체
23.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전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 및 운영업
24. 디자인개발사업
25.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업
26.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1) 본 회사는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공장, 지점, 출장소, 영 업소등을 들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wasung.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본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 로 한다.

2)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 이상에서 발 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 된 미배당분을 다음 회계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 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 정은 유 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 의로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장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 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 인수권증서에 표 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할 기 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 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 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 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삭제 2003. 03. 21)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후 또는 퇴직후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행사하여야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 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4 동등배당) 회사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삭제 2002. 03. 15)

제11조(삭제 2002. 03. 15)

제12조(명의개서 대리인)

- 1) 본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 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명부 작성·비치)

- 1)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 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2)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 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3)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4조(기준일)

- 1)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2)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 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5조 (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 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

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에 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5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6)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7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에 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5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 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9조(소집시기)

-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 2)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구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매 일신문과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급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권자)

- 1) 이사회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회장이 소집한다.
- 2) 대표이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회장으로 한다.
- 2) 대표이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기 및 발언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삭제 2021. 03. 26)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議事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 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 다.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제31조(이사의 수)

1) 본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7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 으로 한 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 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缺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퇴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缺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 중 1명을 회장에 보한다.

3) 본 회사는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씩을 보하여 둘 수 있다

제36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삭제 2000. 3. 24)

제38조(삭제 2000. 3. 24)

제3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못한다.

제41조의2(위원회)

1)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議事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전항의 보수 내에서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44조(상담역과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1)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6)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 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5조의3(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46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7조(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 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 하는 서류

2)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 정하게 표시 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 을 주주총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임원 상여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0조 (2012.3.23 삭제)

제51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 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중간배당)

1) 본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 제한 액 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 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3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가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의 법령 에 의한다.

제 8 장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4년3월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1조는 202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사무추진 및 경영상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정관개정내용

1. 1988년 6월 30일 개정 (전면 개정)
2. 1990년 3월 16일 개정 (2조, 7조, 15조, 16조, 17조, 45조, 부칙 일부 개정)
3. 1991년 3월 15일 개정 (2조 목적추가, 기술용역업)
4. 1992년 3월 12일 개정 (2조, 35조, 36조, 일부 개정)
5. 1993년 3월 5일 개정 (2조, 일부 개정)
6. 1994년 3월 11일 개정 (2조, 일부 개정)
7. 1995년 3월 10일 개정 (2조, 5조, 7조의2, 9조, 16조, 17조 개정)
8. 1996년 3월 15일 개정 (2조, 9의2, 13조, 14조, 16조, 17조, 29조, 30조, 32조, 33조, 36조, 38조, 41조, 47조 개정)
9. 1997년 3월 14일 개정 (2조, 7조의2, 9조, 10조, 15조, 22조, 34조 개정)
10. 1998년 3월 27일 개정 (2조, 5조, 7조의2, 9조의2, 9조의3, 15조, 19조, 30조, 31조, 41조, 44조 개정)
11. 1999년 3월 26일 개정 (2조, 9조, 9조의2, 9조의3, 19조, 20조, 22조, 32조, 34조, 35조, 38조 개정)
12. 2000년 3월 24일 개정 (2조, 9조, 9조의3, 15조, 16조, 23조, 28조의2, 30조, 31조, 32조, 33조, 38조, 39조, 39조의2, 40조, 41조, 제6장 신설, 45조 개정)
13. 2002년 3월 15일 개정 (9조1,2, 9조의3 1,9, 10조,11조, 13조의4, 14조의1,2,3, 18조의3, 19조의3, 33조의3, 35조의3, 38조의2, 39조2의, 40조의2, 제6장 신설, 45조, 46조, 48조, 49조, 50조, 51조, 52조 개정)
14. 2003년 3월 21일 개정 (2조 목적추가(영화상영업)및 삭제, 변경, 9조, 9조의3 신설, 9조3의1, 2, 15조의6 신설, 16조의 6 신설, 19조의 1, 2, 35조의4 신설)
15. 2004년 3월 19일 개정 (2조 목적변경(산업환경설비업), 9조의3 의6, 15조의6, 16조 의 6, 50조의1 개정)
16. 2006년 3월 17일 개정 (49조의1, 후단삭제)
17. 2007년 3월 16일 개정 (2조의, 일부 개정)
18. 2008년 3월 21일 개정 (2조 목적추가(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기술용역 및 컨설팅 사업, 부동산개발업)
19. 2009년 3월 20일 개정 (2조 목적변경(방송통신판매업), 9조, 9조의3, 11조, 15조, 16조, 19조, 31조의2, 43조의2, 48조, 50조)
20. 2010년 3월 26일 개정 (2조 목적추가(통신기기판매대리점업), 4조, 12조, 45조)
21. 2012년 3월 23일 개정 (제9조 제15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22. 2013년 3월 22일 개정 (2조 목적추가(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물재이용사업)
23. 2014년 3월 21일 개정 (2조 목적추가(물질약전문업) 및 목적삭제(방송통신판매업) 제9조, 제16조, 제17조)
24. 2015년 3월 20일 개정 (2조 목적추가(건설기술용역업))
25. 2017년 3월 24일 개정 (43조 개정)
26. 2019년 3월 22일 개정 (2조 목적추가(기계설비공사업),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의2, 제18조, 제35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27. 2021년 3월 26일개정 (2조 목적변경(철강구조물공사업 등), 제7조의2, 제9조의4,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9조의2, 제45조, 제51조, 제52조)

28. 2023년 3월 24일개정 (31조, 35조, 36조)

29. 2024년 3월 22일개정 (1조)